

업 무 계 획 서

2022. 1.



과학기술정보통신부
중앙전파관리소

목 차

I. 일반 현황	1
II. 2022년 주요업무 계획	2
1. 신속·정확한 전파 행정서비스 제공	2
2. 깨끗한 전파이용 환경 조성	3
3. 방송통신 이용자 권익 보호	5

I. 일반 현황

1 연혁

- 1947. 6. 체신부 전무국 광장분실 개소
- 1983. 12. 중앙전파감시소 발족(1987. 12. 중앙전파관리소 개명)
 - 2008. 2. 정보통신부 → 방송통신위원회로 소속기관 변경
 - 2013. 3. 방송통신위원회 → 미래창조과학부로 소속기관 변경
 - 2017. 7. 미래창조과학부 →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 소속기관 변경

2 조직 및 인원

- 조직 및 인원
 - 조직 (5과, 1센터, 10개 지소)



II. 2022년 주요업무 계획

1 신속·정확한 전파 행정서비스 제공

◆ 국가·공공 기관 무선국 및 이동통신 기지국 등 무선국 허가(신고)·검사를 통해 국민이 공감하는 방송통신 행정서비스 제공

- (무선국 허가) 전파법에 따라 허가대상 무선국에 대해 주파수 지정 가능성, 기술적 요건 등을 심사하여 적합할 경우 주파수, 출력, 전파 형식 등을 지정하여 무선국의 개설을 허가
 - (신고) 전파혼신 방지를 위한 주파수 또는 전력을 제한할 필요가 없는 무선국에 대해서는 신고를 통해 간편하게 무선국 개설 지원
- (무선국 검사) 개설허가를 받은 무선국에 대하여 기술적 특성이 전파 법령에서 정한 기술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확인
 - 허가(신고) 받아 운용중인 무선국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적합 여부를 확인하고, 주파수·출력 등의 제원변경 시 적합 여부 확인
- (안전한 전자파 관리) 전자파 인체보호 기준에 따라 기지국 등에서 발생하는 전자파강도 측정값 및 등급표기 적합여부 현장 확인
- (전파사용료 부과·징수) 전파관리 및 진흥을 위해 무선국을 개설한 시설자에게 전파의 이용 대가를 차등적으로 부과

2 깨끗한 전파이용 환경 조성

◆ 전파의 효율적 이용촉진 및 혼신의 신속한 제거 등 전파이용질서 확립

1 전파이용질서 확립 추진

- (불법 무선국 감시) 허가 또는 신고하지 아니하고 무선국을 개설 운용하는 자에 대한 조사·단속 및 조치
 - 불법 무선국이 상대적으로 많은 대형 건설현장·레저 타운, 공단지역 등을 대상으로 합동·수시 단속 추진
- (기술기준위반 단속) 발사되는 전파의 주파수 허용편차, 점유주파수대역폭 등이 무선설비규칙에서 정하는 기술기준을 위반하는 무선국에 대해 시정 및 행정처분
- (허가사항위반 단속) 무선국을 개설한 자가 무선국의 운용, 통신방법, 허가증 기재사항 등을 위반하는 무선국에 대해 행정처분

2 전파혼신 조사

- (전파혼신 조사) 주파수 상호 간 또는 케이블TV 전송선로 누설 전자파 등에 의한 전파혼신 발생 시 신속한 장애 처리

3 외부 전파교란 및 혼신 대응

- (국제전파 혼신조사) 국내에 유입되는 외국 무선국의 전파에 대한 전파규칙(ITU-R의 RR) 위반여부 감시 및 혼신조사

- (위성 전파관리) 한반도 상공 위성*들의 궤도, 위치, 혼신원 탐색 등을 통해 국내 위성망(무궁화5·5A·6·7호, 천리안, 천리안2A호·2B호, 아나시스2호) 보호
 - 국내 위성의 인접궤도에서 운용 중인 외국 위성과 사용 빈도가 높은 주파수 대역의 모니터링을 강화하여 ITU규정 준수여부 확인

- (전파차단장치 인가·신고) 불법 드론 등 공공안전 위협 수단 대응을 위한 전파차단장치의 인가(제조·수입·판매업체) 및 신고(도입기관) 관리

4 전파이용환경 개선

- (주파수 이용현황 조사) 전파자원의 효율적 이용을 위한 주파수 회수·재배치·공동사용 기초자료 확보를 위해 이동통신용 등 수요 가치가 높은 주파수 대역에 대한 주파수이용현황을 조사·분석
- (전파환경 측정) 이동전화 기지국 등 일정 장소에 대해 전파의 세기·잡음 등에 대한 수탁측정요청 시 전파환경을 조사하여 측정결과 제공
- (방송 수신환경 조사) 지상파 UHD 및 DTV 방송수신환경 개선을 위해 TV방송 수신환경 조사를 실시하여 난시청지역 해소
- (방송 표준음량 준수) 방송사업자의 디지털방송 프로그램 음량이 기준에 맞도록 주기적으로 조사·조치하여 시청자 만족도 제고
- (방송편성비율 위반 조치) 방송사업자가 제출하는 방송실시결과를 토대로 방송편성비율 조사 및 관련 법규 위반 사업자 과태료 부과
- (유료방송사업 허가조건 이행점검) 위반 사업자에 대한 행정처분(시정명령) 등을 통해 방송사업자 사후관리 강화

3 방송통신 이용자 권익 보호

◆ 불법 방송통신 기자재 단속 및 통신설비의 공정한 이용, 적법한 기자재 사용을 통한 이용자 피해 예방, 기간·부가통신사업자의 체계적 관리

- **(불법 방송통신기자재 단속)** 적합성평가를 받지 않고 제조·수입·판매되는 불법 방송통신기자재를 조사·단속하여 소비자 피해 예방
 - 적발빈도가 높거나 사회적 이슈가 된 방송통신기자재 등을 중점 관리 대상으로 선정하여 경찰청, 관세청과 합동조사 등 단속활동 강화
- **(방송통신설비 기술기준 적합조사)** 방송통신사업자가 설치·운용중인 방송통신설비의 안전성·신뢰성 및 통신규약 등이 적합한지 여부 조사
- **(전기통신설비 공정이용 관리·감독)** 전기통신설비 의무제공사업자의 여유설비를 원활히 제공받을 수 있도록 관리 감독
- **(전기통신설비 공동구축 관리)** 통신사업자 간 전기통신설비 공동구축 활성화를 위해 공동구축 협의이행 여부 및 분쟁조정 등 지원·관리
- **(통신사업자 관리)** 기간(회선설비 미보유), 부가·특수 유형의 부가(웹하드, p2p 및 인터넷발송문자) 사업자 등록(신고) 수리 및 등록요건 수시 점검
- **(전화번호 거짓표시 금지 관련 검사)** 통신사업자에게 부과된 거짓 표시된 전화번호로 인한 이용자 피해예방 조치 의무이행 여부 검사
- **(공중케이블 점검)** 안전사고 예방, 도시미관 개선을 위해 통신사가 자율적으로 정비하는 공중케이블에 대해 사후점검 실시